

2. 住宅建設促進法施行規則中改正令

建設部令 第531號 1993. 7. 8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기간도로) 영 제3조에서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이 8미터이상인 구획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직할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제8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를 “법 제4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이하 “등록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등록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자격취득자의 이중취업여부

제8조 제6항본문중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등록사항변경신고서”로 하고, 동항단서중 “신청”을 “신고”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5천원”을 “1만원”을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영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본금의 증액
2. 기술자격취득자가 변경된 경우
3. 사무실면적이 증가된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등록업자의 처분통지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도의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도지사가 통보한 처분내용을 포함한다)을 등록업자처분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본문중 “건설부장관에게”를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지정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본문중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지정업자지정사항변경사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

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지정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대장) 건설부장관은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보고받거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경영상태진단등의 실시)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의 경영상태진단의 실시에 관하여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구기관명(제출처. 다만,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제출처 및 당해 주택건설지구)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 (입주자저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이를 취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의 취급기관은 저축 및 예금의 실적등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14조의4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청약저축) ①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무주택세대주로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서울특별시, 직할시, 시·군의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한다)에 있는 청약저축취급기관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청약저축의 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③ 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5천원의 배수로 한다.

1.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국민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 월 2만원이상 5만원이하

2.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 월 5만5천원이상 10만원이하

④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월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이상 2년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이상인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10퍼센트

⑤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

제14조의4 (청약예금) ①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세대주로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서울특별시, 직할시, 시·군의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한다)에 있는 청약예금취급기관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청약예금의 이율 및 조성된 자금의 사용용도는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청약예금은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 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④ 청약예금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5조의2 (주택상환사채모집 공고) ①

영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의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사채금액
4. 사채신청지역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사채이율·이자지급방법·사채대금 납부방법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매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② 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를 준용한다.

③ 사채발행자는 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모집안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사채의 상환등) ① 영 제27조의4제2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24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채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발행자는 지체없이 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사채원부 및 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채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사업주체의 변경) 영 제3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사업주체의 파산·합병·사업자등록말소·영업정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한다.

제19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 제3항본문중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단위규모 변경”을 “단위규모 및 대지지분의 변경”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중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

서의 면적증감. 다만, 대지면적의 증가로 지구경제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단지내 도로의 선형 변경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사업계획승인의견서) 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의 제목“(준공검사등)”을 “(사용검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준공검사”를 각각 “사용검사”로, “준공검사서”를 “사용검사서”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①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주택을 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장

등은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예정자는 10인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계속 시공할 자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33조의2제4항이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의 제목중 “국민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사업주체의”를 “사업주체 또는 시장등의”로, “국민주택전매·전대동의신청서”를 “주택전매·전대동의신청서”로, “국민주택사업주체에”를 “사업주체 또는 시장등에게”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주택사업주체”을 “사업주체 및 시장등은”으로, “국민주택”을 각각 “주택”으로, “국민주택사업주체가”를 “사업주체 또는 시장등이”로 한다.

제32조 제1항중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주택조합인가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시장·군수”를 “시장등은”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시장·군수에게”를 “시장등에게”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등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또는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나 신고필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 제42조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세대주인 자가 주택조합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후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양가족이 없게 된 경우로 한다.

1. 부양가족의 사망·혼인 또는 이혼
2. 부양가족의 2년이상의 해외체류

⑧ 영 제4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해당침체한기간”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기간을 말한다.

⑨ 영 제42조제6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상 대지의 최소면적이하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 파산등의 사유로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다만, 주택건설업자의 파산 및 등록말소 또는 지정취소사유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된 토지를 공매하는 경우

제32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2조제8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축사협회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전문회사

4.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

5.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연구기관이 상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의2제2항 본문중 “영 제42조제5항”을 “영제42조제8항”으로,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위험구역으로서 재건축이 필요한 사유(영제4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5.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등의 재건축이 불가피한 사유(영 제4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건축공정) 영 제43조의5제1항제4호다목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공정”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을 말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시공지
도) 영 제43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공사를 시공
하는 조합원에게 건설공사에 관한 의
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
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
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
업자협회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확인등의 위탁업무를 수
행하는 때에는 각 등록업자 및 지정업
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을 포함한다)와 착공 및 준공확인
서에 의하여 당해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위치도란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배치도란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하며, 조경도란
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제4호를
삭제하고, 단면도란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제10호 및 제12호를 삭제하
며, 전기설비도란의 표시하여야 할 사
항란의 제2호중 “적산전력계”를 “전력
량계”로 한다.

2. 대지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별표 3]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준공”을 각각 “사용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0
원”을 “1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란중 “10일이
내”를 “30일이내”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표중 “준공예
정일”을 “사용예정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 금액란을
“10만원”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면
의 구비서류 나중, “준공필증”을 “사용
검사필증”으로, “미준공”을 “미사용검
사”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
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4호의2
서식]으로 하고, 동서식의 제목 “지정
업자지정대장”을 “등록업자 및 지정업
자대장”으로 하며, 동서식중 “지정”을
각각 “등록 및 지정”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제목 “지정업자
지정사항변경신청서”를 “지정업자지정
사항변경신고서”로 하고, 동서식중 “신
청합니다”를 각각 “신고합니다”로, “위
신청인”을 “위 신고인”으로, “이 신청
서는”을 “이 신고서는”으로, “신청서
작성”을 “신고서 작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표중 “준공예정
일”을 “사용검사예정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제목 및 동서식의 내용중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각각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2. 주택란의 표중 “㉔발코니의 유효폭”을 “㉔계단의 유효폭”으로 하고, 동서식의 4. 부대시설 설치계획란의 표중 “㉘가스공급시설”을 “㉘공중변소”로, “㉙자동차정류소”를 “㉙주차장”으로, “㉚관리사무실”을 “㉚관리사무소”로 하며, 동 기재당 주의사항란 제2호중 “적산전력계설치”를 “전력량계 설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제32호서식]중 “준공예정일자”를 각각 “사용검사에정일자”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및 동서식의 내용중 “준공검사”를 각각 “사용검사”로 한다.

[별지 제33호2서식]이 제목중 “(준공)”을 “(사용)”으로 하고, 동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로 하며, 동서식중 “준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3서식]중 “준공”을 각각 “사용”으로 하며, 동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2항”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로 한다.

[별지 제33호의3서식]중 “준공”을 각각 “사용”으로 하며, 동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2항”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제목 및 동서식의 내용중 “국민주택”을 각각 “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제목중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의 내용중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로 하며, 동서식의 수수료란중 “없음”을 “1만원”으로 하고, 동서식구비서류란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서 1부.

7. 기타 영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제목 및 동서식의 내용중 “설립”을 각각 “설립(변경·해산)”으로 한다.

[별지 제43호 서식] 및 [별지 제4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청약예금의 종류 및 예치금액(제14조의4제4항 관련)

(단위 : 만원)

주택의전용면적 지역	85제곱미터이하	85제곱미터초과 102제곱미터이하	102제곱미터초과 135제곱미터이하	135제곱미터초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	300	600	1,000	1,500
기타직할시	250	400	700	1,000
기타시급도시	200	300	400	500

□ 개정이유 □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1992. 12. 8. 법률 제4,530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의 공고에 관한 사항 및 주택 입주예정자가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사항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민영주택의 공급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의 근거를 신설하며,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시기를 자율화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종전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을 연1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적합여부등 기술적인 사항을 협회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함(제8조).
- 나. 민영주택의 공급에 있어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예금은 한국주택은행에서 취급하도록 하되, 예금의 이율과 사용용도는 건설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4조의2).

- 다.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접수일의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안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제15조의2).
- 라. 사업주체와 시공보증회사가 모두 파산등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10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대표자들이 공사를 계속 시공할 자를 정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제22조의2).
- 마. 공동주택은 노후·불량주택에 한하여 이를 재건축할 수 있는 바, 그 노후·불량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관의 범위에 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한국건설안전기술원 및 대학교부설연구기관을 추가함(제32조의2).

<건설부 제공>